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73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

I.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73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8.
- (3) 회 부 일 : 2025. 10.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경제안보 차원의 위협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안보상 긴요한 핵심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업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이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기금 앞 출연 등을 통해 재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발적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 시 세액공제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10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박수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6) ○ 공제대상: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기금(「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 공제율: 10% ○ 시행일: 공포한 날

* 박수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35)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¹⁾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품목²⁾ 및 경제안보서비스³⁾의 확보,

1)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자원 포함)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2호)

2)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3)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⁴⁾

「공급망안정화법」 제39조에 따르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①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③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④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임.⁵⁾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지정된 것(「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5호)

4)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5) 「공급망안정화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참고로 2025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에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⁶⁾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급망안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음.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등을 심의함.⁷⁾

-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 5. 기금의 운용비용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민간기업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이 증가할 경우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음.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의결되었지만,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증채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 중심의 소극적 기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음.⁸⁾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민간 자금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적극적인 기금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임.

8)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의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2025년 7월 기준 총 3조 2,892억원의 대출이 지원되었고 정부는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⁹⁾,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며¹⁰⁾,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재원 구성의 다양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지원수단별	구 분	'24년				'25. 7월			
	대 출	20,119				32,892			
	투 자	1,000				200			
	합 계	21,119				33,092			
기업규모별	구 분	'24년				'25. 7월			
		승인 건수	비중	승인 금액	비중	승인 건수	비중	승인 금액	비중
	대기업 ^{주)}	11	50.0	19,560	92.6	16	55.2	29,284	88.5
	중견기업	3	13.6	800	3.8	10	34.5	3,661	11.1
	중소기업	8	36.4	759	3.6	3	10.3	147	0.4
	합 계	22	100.0	21,119	100.0	29	100.0	33,092	100.0

9)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 12. 29.

10) 정부는 2024년에 원화기준 발행액 5조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2025년에는 원화기준 발행액 10조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

지원분야별	구 분		'24년	'25. 7월
	첨단전략 산업	이차 전지	8,700	6,050
		반도체	4,500	7,100
	소계		13,200	13,150
	자원안보	핵심 광물	3,990	1,620
		에너지	-	11,258
	소계		3,990	12,878
	경제필수재	식량	810	4,100
		산업 원료	3,114	1,466
		기계 장비	5	1,000
	소계		3,929	6,566
	물류인프라·서비스		-	498
	합 계		21,119	33,092

주) 펀드투자는 대기업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둘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에 출범하여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기금의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친 이후 민간 재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민간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수혜기업,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셋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6월 27일부터 5년간 2029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의 조성이 가능한 반면¹¹⁾, 개정안은 조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11) 「공급망안정화법」 [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2023. 12. 26., 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있음.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해당 특례의 타당성,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성, 정책의 효과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거쳐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은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공급망안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7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